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87 발의연월일: 2025. 4. 10.

발 의 자: 김주영·박홍배·이학영

김태선 • 박 정 • 박상혁

이용우 • 박균택 • 허성무

양문석 • 이정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정책적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방세 세제 지원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현행 세제 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모두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
한 감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한 감면)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	
인고용공단이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	
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	
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u>2</u>	<u>2</u>
<u>025년 12월 31일</u> 까지 경감한다.	027년 12월 31일